

우리나라工業所有權制度와 國際化方向

(下)

李 承 初

<特許廳 總務課長>

—承前—

③ 其他

유럽特許協約 등이 最近 發効되었으며 이밖에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으나 締結된 條約으로서는 商標登録條約(TRT), 微生物의 國際寄託에 관한 Budapest條約, 科學的 發見의 國際登錄에 관한 Geneva條約등이 있다. 또한 開發途上國의 支援과 技術移轉에 關聯하여 개발도상국을 中心으로 한 파리協約의 改正도 廣範圍하게 推進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3月 10日 以後發効된 日本·中共間의 商標保護協定도 先進技術을 導入하기 위한 前哨段階라 할수 있다.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一現行 各國의 特許制度는 1個의 發明을 複數國에서 保護를 要請하고자 할때는 各國에 出願해야 하는데 이의 繁雜性과 審查官의 重複審查를 避할 수 있으며 技術情報로서 特許情報利用促進을 圖謀하여 開發途上國에 대한 技術提供을 그 目的으로 하고 있음.

一批准 및 加入國

美國, 西獨, 스위스, 英國, 프랑스, 蘇聯 등 20個國, 日本도 加入(78. 10. 1.)

○IPC에 대한 스트拉斯부르協定

一目的：特許分類를 國際的으로同一하게 함으로써 各國의 文獻整理, 活用이 容易하여 심사를 促進할 수 있음.

一批准 및 加入國

26個國(78. 1 現在)

○商標登録條約(T.R.T)

一目的：國際出願으로 取得한 國際登錄商標는 各國의 國內登錄과同一한 效力を 가지며 國제

등록이 更新되면 各國의 國內登錄의 效果도 更新期間만큼 延長하려는 것이 그 목적임.

一效果：一國에의 出願으로 他國家의 登錄取得 및 登錄存續期間更新節次簡素化.

○파리協約의 改正動向

開發途上國은 特許制度로 因하여 科學技術의 利用이 크게 制限을 받고 있으므로 이의 보호를 위해 再調整되어야 한다고 主張

<改正試案의 要旨>

一權利의 不實施에 대한 制裁措置의 強化(強制實施權利)

一 권리의 불실시에 대해 無效 또는 取消할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함.

一他同盟國으로부터 特許에 關한 情報를 提供 발을 권리를 가짐.

一同盟이 工業所有權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努力할 義務를 規定하고 있음.

③ 國際化에 對備한 앞으로의 方向

위에서 살펴본 여러가지 狀況에서 앞으로 國際化趨勢에 對備하여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에 대해 세가지 側面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즉 政府側(特許廳), 一般企業側(個人包含), 그리고 研究者(學界)로 區分해 보기로 한다.

1. 政 府

工業所有權制度의 발전을 위해서는 政府側의 노력만으로 어렵다는 것은 위에서도 밝힌바 있다. 國家產業發展에 寄與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공업소유권제도가 지니는 趨旨인 만큼 出願된

것을 심사하여 권리를 設定하였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積極的으든 消極的으로든 간에 活用하여야 한다. 特許行政은 이렇게 잘 활용이 되도록 嚴正迅速하게 處理해 주는 것이 世界的으로 共通된 任務라 하겠다.

특허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공업소유권제도의 伸張과 國際化의 추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 工業所有權 國際세미나 開催

1978年 WIPO加入에 대비하여 WIPO 事務次長, 前美國特許廳長등을 招請하여 우리나라 最初로 國際工業所有權세미나를 開催함으로써 政府, 學界, 企業人們에게 널리 周知시킨 바 있다.

나. WIPO加入

1978年12月1日字로 WIPO 加入寄託書를 提出하여 79年 3月 1일부터 發效됨으로써 83번째 加入國이 되었다.

다. 工業所有權法 全面改正

우리나라의 工業所有權法(特許, 實用新案, 意匠, 商標法)이 WIPO에서 制定한 開發途上國의 Model法과 比較, 全面改正하여 國際化趨勢에 跟蹤이 없도록 推進해 나가고 있다.

라. 國際特許分類(IPC)導入

國際特許分類(IPC)로의 轉換分類制度란 全產業分野를 同一한 技術類로 분류하여 심사한다는 것이다. 現在는 日本것과 비슷한 韓國固有의 제도를 採擇하고 있으나 이를 國제화하여 各國이統一化하고자 하는 것이 IPC制度이다.

일본이 이 제도를 채택하여 實行中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81年부터 시험할 계획으로 諸般業務를 추진중에 있다.

마. 企業內의 特許管理專擔部署設置

공업소유권제도가 名實相符하게 國家產業發展에 기여하려면 무엇보다도 기업에의 활용이 必要한 것이다. 출원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 80%以上이 企業出願인데 反하여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업출원이 20%를 넘치 못하며 더구나 기업의 特許權活用狀態는 거의 不毛地帶라 할수 있는 程度이다.

이를 勘察하여 특허청에서는 企業內에 特許管理專擔部署의 設置를 積極推進하여 그들로 하여금 外國에의 進出로 國際競爭力を 強化하는 한편 國內에서는 繢出되는 새로운 技術情報資料를 이용하여 二重投資나 重複研究등을 피하고 나아

가서는 自主技術開發體制確立을 이룩하도록 하 고 있다.

78年 3月 現在의 專擔部署設置狀況을 보면 不過 4個業體(金星社, 太平洋化學, 東亞製藥, 浦項製鐵)이었던 것이 현재는 205個業體로 늘어나 매우 活潑히 運營되고 있다. (表 3 參照)

〈別表 3〉 特許管理專擔部署設置企業現況

項目 業種	設置業體數	專擔要員數
綜合商社 및 貿易業體	12	35
機械	44	158
電氣 및 電子	39	124
化工	40	112
藥品	17	55
織繩	16	59
金屬	10	41
建築	1	1
其 他	26	56
計	205	641

2. 一般企業體

정부의 적극적인 공업소유권제도를 國内外에 施策으로서 展開하기 위해서는 發明(考案)에서부터 권리의 활용에까지 그 실체를 움직이는 企業人の 識認과 活動이 매우 重要하며 이 제도의 生死을 쥐고 있다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國제화에 대비하여 갖추어야 할 事項을 살펴본다.

가. 工業所有權制度에 대한 認識提高

공업소유권제도는 그 本來의 性質上 短期間의 投資로 短期間에 效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의 經營者나 全社員에게 認識이 잘 되어있지 못한 것은 事實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해도 한 기업에서 특허 전담부서가 部의 形態로 4~5個課를 두고 60~70名의 專擔要員을 確保하고 있으며 各工場은 물론 事業部에도 專擔者가 配置되어 모든 部署에 緊密한 情報蒐集과 傳達이 마치 풀뿌리처럼連結되어 있다. 즉 각 部에는 特許連絡會가 있고 新入社員에게는 물론 全職員에 대해서도 年 2回以上 定期教育을 실시함으로써 特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을뿐만 아니라 全社의인 特許管理를 실시하고 있다. 1個企業이 출원하는 件數만해도 10,000~20,000件까지 되며 保有한 권리의 15~20%는 實際製品生產에 활용하여 先進強

大國과의 競爭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立場에서도 가까운未來를 보기보다도 먼來將를 위한人力과豫算의投入으로特許管理業務가기업에서 그組織을具備하여 전사적인體制로 움직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職務發明制度의 實施

現代의 組織的이고 老大한 機構속에서 考案되는 아이디어는 個人的思考力보다는 質·量面에서 優勢할뿐만 아니라 繼續的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여 국제경쟁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國家公務員은 73年度부터 실시)

다. 情報資料蒐集의 徹底 및 이의 活用

정부에서 國家間의 條約 및 國際關係를 맺음에
따라 先進外國의 優秀한 最新技術情報量入手하
게 되므로 기업에서도 이의 萬集에 徹底하고 필
요한 기술을 選別導入하여 이를 消化改良함으로
써 自主技術開發體制의 基盤을 構築하여 야 할 것
이다.

라. 特許專擔部署의 設置와 그 機能

國際間의 기술정보에 관해 경쟁이 燥烈해짐에 따라 이를 전담해야 할 特許管理專擔部署設置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 部署의 機能은 다음과 같이 主要機能을 遂行해야 한다.

○新製品開發에 의 誘導

○ 특허정보의 관리

○各種技術契約의 作成要 索引

○ 권리의 보호, 薦後管理, 紛爭의 解決

○ 기업이 研究開發한 기술 및 商標의 適切한
國內外에의 權利化

外國進出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先進外國은 공업소
유권을 經濟進出의 武器로 삼고 있음을 알수 있
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輸出의 增大나 經濟交
流가 증대됨에 따라 海外에 積極進出하여야 한
다. 최근의例를 들면 파라파이의 까발레로라는
辯護士가 우리나라의 pony商標를 비롯한 새한
自動車, KAL, 文化放送·京鄉新聞등의 마크를
그 나라 특허청에 등록하여 놓았으며 pony의
경우는 수출된 자동차를 上陸과 同時 押留까지

하는 事態가 發生하였다.

그외에도 中東에서의 스피아민트껌商標, 東南亞에서 高麗人參등 많은 問題를 惹起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해외에 진출하려면 우선 수출하려는 品目에 대한 商標權부터 출원하고 그리고 製品이 진출하여야 분쟁을 事前에 防止할수 있다. 혼히 問題가 발생하고 나서야 그 彌縫策을 마련하기 보다는 世界各國에 사전에 출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여 해외진출에 錯誤가 없어야 할 것이다.

3. 舉 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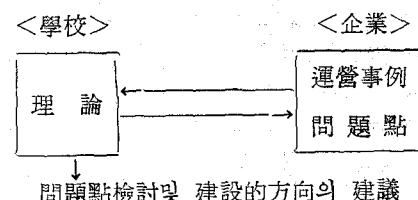
學界에서는 講座新設과 產學協同體制의 構築이 필요하다.

新設講座

○法科大學：學問的研究를 위한 講座

○理工系 : 産業界活用を 위한 講座

4. 產學協同體制構築



4 結 語

그동안 우리의 經濟가 팔목할만하게 발전되고
있어, 더욱이 關心의 대상으로 공업소유권제도
가 浮上할 것임은 앞의 圖表에서 살펴본 바와 같
다.

개인에 의한 출원이 대부분인 실정은 아직도 기업에 깊숙이 이 제도의 重要性이 인식되지 못함을 意味하지만 近間 企業에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그 運營이 활발해짐을 볼때 希望을 갖수 있다하겠다. 정부는 정부대로 이 제도의 국제화에 段階的으로 보조를 맞추어 가고 기업은 기업대로 技術開發에 注力하고 権利化하여 그 활용을 넓혀갈때 學界의 활발한 研究뒷발침으로서 우리나라 장래의 공업소유권제도는 밝다 하겠다.

(完)